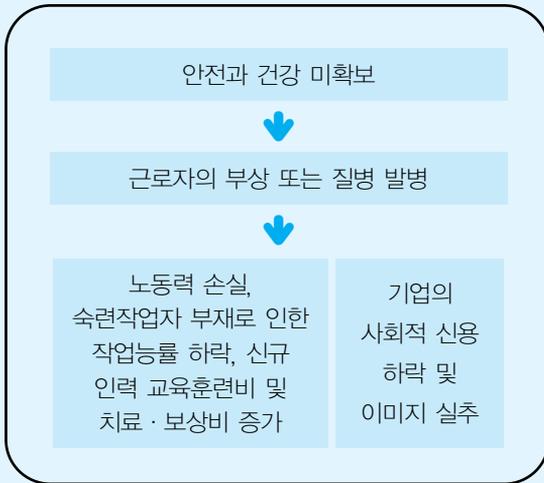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업무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주가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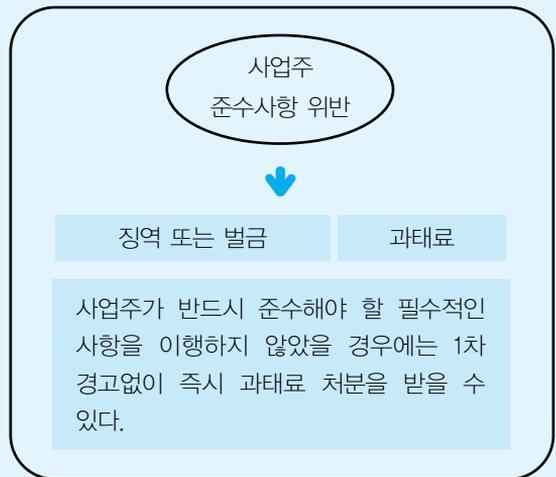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는 경영활동의 필수적 요소이다.



2.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

- (1) 유해·위험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 (2)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실시
- (3) 유해물질 관리
- (4)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

3.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4. 즉시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가. 반복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 (1)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1년간 2회 이상 미실시
- (2) 채용·작업내용변경·특별안전보건교육을 2회 이상 미실시
-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최소 3년간 2회 이상 게시 또는 비치 위반
- (4)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실시
- (5) 작업환경측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실시

(6) 근로자 건강진단을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 실시



나. 작업환경측정 실시 위반

(1) 측정결과 허위 보고
 (2)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1)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2) 실시결과 허위 보고
 (3) 사업주가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위반

(1) 6개월 이상 위원회 미설치
 (2) 최근 1년간 2회 이상 정기회의 미개최

마.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위반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위반
 (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위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
 (3)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위반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

(1) 목적외 사용금액이 총 사용 금액의 5%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 위반
 (3) 공정률이 70%를 초과하고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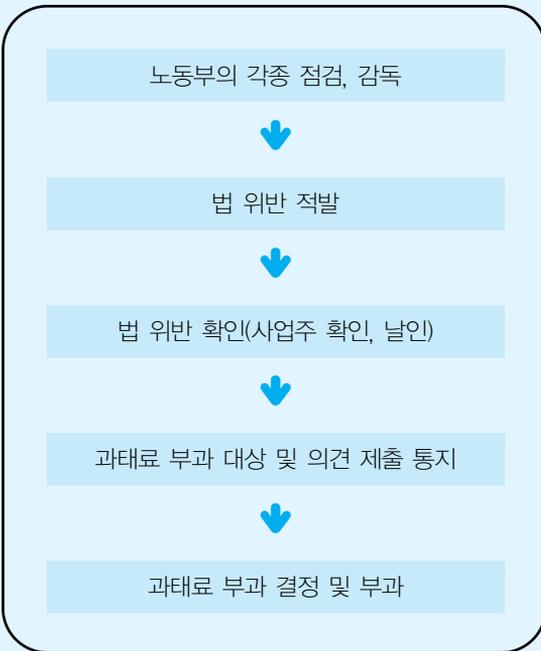
- (1) MSDS의 제출명령 또는 취급 주의사항 작성 명령 불이행
- (2) 안전보건진단 실시 명령 위반



자.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위반

사망 또는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재해를 최소 1년 이내 2건 이상 기록·보존을 하지 않았을 경우

5. 과태료 부과



6. 질의 내용

[질의 1]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은 후 즉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발부하게 되며,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질의 2]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소명(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우리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실시한다

※ 납부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준수해야 할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사업주가 실시하

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05. 6. 1부터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차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총칙상에 규정된 사업주의 주요의무사항

1. 산업재해 발생보고(법 10조-규칙 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자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법령요지의 게시(제1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대표가 다음과 같은 사업장내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내용 및 결과를 알고자 할 때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노동부령이 정한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자체검사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 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 도급사업장에 있어서 안전·보건상 조치
- 근로자에게 보건상 해로운 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운반, 양도시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

3.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상황을 미리 인지하도록 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내의 각종 시설 및 장소 등에 산업안전보건표지(39종)를 부착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